

제2827호
2021. 5.12.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 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
전화: 3396-4951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1-352호 : 서울특별시 중구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 고 시

제2021-64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9
제2021-65호 :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10
제2021-66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11

● 기 타

(주)하나은행 고시 제2021-1호 :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전고시 1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1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서울특별시중구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1 - 352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 이유

저소득 경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추가수당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장애수당 추가 지원의 목적 및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지원 대상 (안 제3조) : 저소득 경증장애인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보장이 있는 자
 - 경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원 기준 (안 제4조) : 월 20,000원 이내
- 지원 시기 (안 제5조) : 매월 지급 원칙
 - 지원 대상 선정 소요시간,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한 지원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절차 및 자격 (안 제6조)
- 지급 방법 (안 제7조)

-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안 제8조)
- 지원대상자 관리 등 (안 제9조)
- 시행규칙 규정 (안 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내용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 방법

- 가. (우 편)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여관동) 중구청 3층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나. (이메일) memobox429@junggu.seoul.kr
- 다. (팩 스) 02-3396-8734

※ 문의 : 중구청 사회복지과 조아라 ☎02-3396-5374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경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경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추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경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이 있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수당 추가 지원”이란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장애수당’외에 별도로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지원하는 장애수당을 말한다.
3. “장애수당 추가 지급대상자”란 18세 이상의 등록된 장애인 중「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0조에서 규정하는 장애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로 하며 다음 각 목의 대상자는 제외한다.
 - 가.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보호자”란 경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애수당 추가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서울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경증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월 20,000원 이내의 장애수당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시기) 장애수당 추가지원(이하 “추가수당”이라 한다)은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구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신청 절차 및 자격) ① 추가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지급계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가수당 지원(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고 대리신청의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은 「장애인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지급 방법)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15일(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까지 구청장에게 추가수당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좌를 통하여 추가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추가수당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 자격 및 지급 절차 등은 「장애인복지법」의 규

정에 따른다.

- ⑤ 추가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말소 등으로 지원대상자의 지급계좌가 해지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지급기준일 이후에 신청한 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추가수당을 다음 달에 소급해서 지급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① 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 기준일까지 그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
 - 2. 지원대상자가 전출·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장애인 추가수당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 3.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4.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추가수당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동장은 추가수당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지급 등 기준 관련 사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애수당’의 기준을 준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수당 추가 지원 (□신규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금융기관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수당 추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장애수당 추가 지급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지원대상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통장사본
담당공무원 확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여부, 기초수급자 여부, 차상위 자격 여부

위 임 장

대 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위임인(대상자 본인)은 장애수당 추가 지원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위임인(지원대상자 본인)과 수임인(대리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저소득 경증 장애수당 추가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애수당 추가 지급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뒷쪽)

장애수당 추가 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사유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개월 간)	

대 리 수령인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급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	-------	------

※ 아래 법정대리인란은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확정 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법 정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경증 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추가수당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	--

장애수당 추가 지원 관리대장

[illegible]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 - 64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고시일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413-10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21길 71	2021. 5. 12.	청구로21길의 기초번호 부여
		2011. 3. 2.	옛 지역 명칭인용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100-19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길 49-17	2021. 5. 12.	퇴계로8길의 기초번호 부여
		2010. 6. 30.	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87-14, 287-21, 287-33, 287-42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4길 13	2021. 5. 12.	청구로4길의 기초번호 부여
		2011. 3. 2.	옛 지역 명칭인용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 - 65호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우리 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변경된 도로명주소

변경 전 도로명주소	변경 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 로 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지하 199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지하 214	2021. 5. 12.	퇴계로의 기초번호 부여
		2010. 4. 22.	조선시대 유학자 이황의 호 인용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 - 66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청구로21길 71	2021.5.12.	건물 철거
퇴계로8길 49-17	2021.5.12.	건물 철거
청구로4길 13	2021.5.12.	건물 철거
청구로4길 15	2021.5.12.	건물 철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기 타

◎ (주)하나은행 고시 제2021-1호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이전고시

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32호(2007.5.17.) 및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8-4호(2018.1.11.)로 정비계획 변경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65호(2018.5.24.),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8-97호(2018.9.20.)로 변경(경미한변경)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8-124호(2018.11.14.)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9-34호(2019.3.2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21-37호(2021.3.31.)로 공사완료 고시,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21-48호(2021.4.21.)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같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02-2002-219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5월 12일

주식회사 하나은행 수탁영업섹션 대표이사 하 상 국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2) 명 칭 :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지적확정측량결과에 의함)

- 1)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47-1번지 일대
- 2) 면 적 : 1,603.0㎡(대지 1,399.4㎡, 정비기반시설 203.6㎡)

다. 사업시행자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 1) 명칭 및 대표자 : (주)하나은행 수탁영업섹션(대표이사 하상국)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5

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9. 3. 27. (최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2021. 4. 21.)

마. 공사완료 고시일 : 2021. 3. 31.

바. 이전고시 내역

1) 사업시행면적

종 전			확 정		
대지면적(㎡)		1,399.4	대지면적(㎡)		1,399.4
정비기반 시설면적 (㎡)	도로(중로3-1)	200.7	정비기반 시설면적 (㎡)	도로(중로3-1)	200.7
	도로(소로2-4)	2.9		도로(소로2-4)	2.9
	소 계	203.6		소 계	203.6
계(㎡)		1,603.0	계(㎡)		1,603.0

2) 건축시설의 종류 및 규모

- 용 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높이(층수) : 69.9m(지하6층/지상17층)
- 건축연면적 : 18,423.00㎡

※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별 세부내역(이전고시 대상면적) : 별첨

3) 토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 : (주)하나은행 수탁영업섹션

- 토지

구 분		소재지	면 적(m²)	비 고
대지		수표동 100	1,399.40	
정비기반 시설	도로(중로3-1)	수표동 100-1	200.70	서울특별시로 무상귀속
	도로(소로2-4)	수표동 100-2	2.90	서울특별시 중구로 무상귀속
	소 계		203.60	
합 계(시행면적)			1,603.00	

- 건축시설

구 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비 고
계	18,423.00	
토지등소유자	13,412.00	
체 비 시 설	4,961.00	
보 류 지	50.00	

사. 관계서류 열람장소 : 사업시행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02-2002-2193)

별첨 :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별 세부내역(이전고시 대상면적)

연 번	소유자	총전의 토지 및 건물						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물					청산 징수, 교부금		비고
		지번	토지(㎡)		건물(㎡)			소유자	지번	토지(㎡)		건물(㎡)	징수금	교부금	
			지목	지적	구조	용도	면적			지목	대지지분				
1	(주)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수표동 47-1	대	84.90				(주)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수표동 100	대	1,018.77	연면적 18,423.00㎡중 13,412.00㎡			
2		수표동 47-2	대	30.80											
3		수표동 47-3	대	145.80											
4		수표동 47-4	대	62.50											
5		수표동 47-5	대	362.00											
6		수표동 60	대	413.20											
7		수표동 61	대	228.10											
8		수표동 62-4	대	152.40											
9		수표동 62-5	대	9.90											
10		수표동 63-4	대	66.90											
사유지 계				1,556.50 (측량면적:1,560.40)				환지 소계			1,018.77	연면적 18,423.00㎡중 13,412.00㎡			
								체비지 (사업시행자)	수표동 100	대	376.83	연면적 18,423.00㎡중 4,961.00㎡			
								보류지 (사업시행자)	수표동 100	대	3.8	연면적 18,423.00㎡중 50.00㎡			
11	서울특별시	수표동 65-4	도	32.80											
12	서울특별시	수표동 99-3	도	0.20											
13	중구	수표동 99-5	도	9.60											
국공유지 소계					42.60										
								서울특별시	수표동 100-1	도	200.70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100-2	도	2.90				
								신설정비기반시설 소계				203.60			
총계				1,603.00				총계			1,603.00	18,423.00			